

## 『한국문화기술』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

1.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.
2. 편집위원은 국어국문학, 문예창작학 전공교수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재직자를 위주로 하며, 전공별로 적절히 안배한다. 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3. 편집위원의 총인원은 5~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4. 편집위원의 논문은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5.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, 위촉하고 ‘게재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게재불가’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·집행한다.
6.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.
7.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- 1) 심사결과 ‘게재’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.
  - 2) 심사결과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A4 1쪽 분량 이상의 수정대조확인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.
  - 3) 심사결과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.
  - 4) ‘게재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또는 ‘수정 후 게재’ 3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- 5) '게재'와 '수정 후 게재'의 판정에서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'수정 후 게재'로 판정하고 위 2)항의 규정을 따른다.
  - 6) '게재'2와 '게재 불가'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'수정 후 게재'로 판정하고 위 2)항을, '게재'1과 '게재 불가'2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'게재 불가'로 판정하고 위 3)항의 규정을 따른다.
  - 7) '수정 후 게재'2와 '게재 불가'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'게재 불가'로 판정하고 위 3)항의 규정을 따른다.
8.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'게재', '수정 후 게재', '게재 불가' 등의 판정 소견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